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등〉

- 허중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72호)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78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9
1. 총괄검토	9
가. 제정안의 개관	9
나.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입법필요성 검토	13
2. 조문별 검토	18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5조)	18
나.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안 제6조~제9조) ..	25
다.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안 제10조~제18조) ..	33
라.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등(안 제19조~제29조) ..	50
마. 제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허중식의원안 제30조~제34조, 김원이의원안 제31조~제38조)	78
바. 제6장 벌칙(허중식의원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김원이의원안 제39조 및 제40조) 및 부칙	85

※ 참고자료	90
1. 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	90
2. 풍력 보급/허가 통계	91
3. 풍력발전사업 절차도 (현행 방식)	92
4. 현행 풍력사업 개발 절차 vs 특별법 절차 비교	93
5. 풍력 관련 계획입지제도 국가별 현황	94

I.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04372호】

1. 발 의 자 : 허중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6.
3. 회부연월일 : 2024. 9. 27.

【의안번호 제2204378호】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26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6.
3. 회부연월일 : 2024. 9.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제2204372호】

제안이유

해상풍력사업은 그간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더불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도 부족하였음.

이로 인해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기 용량은 약 124.5MW로서, 2017년 ‘재생에너지 3020’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인 12,000MW의 약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국가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 지정 및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도모하는 동시에 접근시설 및 공동구 설치를 연계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전력의 안전한 송전으로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구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와 해상풍력산업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로 하여금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발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해상풍력발전지원단을 둠(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 및 기본설계안을 수립·확정하며,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이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 및 공동구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
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
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발전지구
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
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9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과 국제
협력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공공성이 높은 위촉위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
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둠(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의안번호 제2204378호】

제안이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사명으로,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특히 해양풍력 같은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개발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함.

그러나 그간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의 제약이나 환경문제 및 대량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점 등에서의 여러 잇점과 조선·철강·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밀접함에도 해상풍력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해상풍력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 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질서 있게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구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질서있는 보급을 확대하여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로 하여금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발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개발실시 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둠(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안을 수립하며,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바람연금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 두고,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풍력발전사업자인 경우 이 법에 따라 선정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해상풍력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추진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하고,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하고,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개관

각 제정안은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의 질서 있는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발전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와 발전지구의 지정,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의 구성·운영, 해양환경 영향 조사·협의, 환경성평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및 해상풍력발전산업 진흥·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허종식의원안은 총 6장 37개의 조문 및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원이의원안은 총 6장 40개의 조문 및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제정안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아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사업, 해상풍력발전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조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3장에서는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 기본설계, 해양환경 영향 조사 및 협의, 주민 수용성의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주민참여 이익공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토지등의 사용·수용, 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및 준공인가, 풍황 계측기의 이용, 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아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사업(허종식의원안), 전기사업허가등에 대한 특례 및 금지(김원이의원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항만시설의 지원 등 해상풍력산업의 기반조성·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

제6장 벌칙은 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 및 인·허가 등에 관한 서류 제출, 착공 및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벌칙2과 함께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김원이의원안은 집적화단지에 대한 적용례 규정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표 1] 제정안의 조문 구성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장	조	조 제목	장	조	조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제6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제6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제7조	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	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	추진단 등의 설치		제9조	추진단 등의 설치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제10조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제10조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제11조	예비지구의 지정 등		제11조	예비지구의 지정 등
	제12조	예비지구의 지정해제		제12조	예비지구의 지정해제
	제13조	기본설계의 수립·확정 등		제13조	기본설계의 수립·확정 등
	제14조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제14조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제15조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제15조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제16조	발전지구의 지정 등		제16조	발전지구의 지정
	제17조	발전지구 계통의 연계 및 공동구의 설치 등		제17조	발전지구 계통의 연계
	제18조	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등		제18조	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등

- 1) 그 밖에 허종식의원안은 보안관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고, 김원이의원안은 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운영, 수출 지원, 수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음.
- 2) 허종식의원안은 기본설계 및 개발실시계획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장	조	조 제목	장	조	조 제목
제4장 해상풍력발 전사업자의 선정 및 인·허가 등	제19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 정 등	제4장 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등	제19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 정 등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 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제21조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 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제2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등의 의제		제2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등의 의제
	제23조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제23조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24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제24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제25조	착공 신고		제25조	착공 신고
	제26조	준공인가		제26조	준공인가
	제27조	풍황 계측기의 이용 등		제27조	풍황 계측기의 이용 등
	제28조	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		제28조	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
제5장 해상풍력발 전산업 기반 조성 등	제29조	예비지구 및 발전지 구 아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사업	제5장 해상풍력산 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제29조	전기사업허가등에 대한 특례
				제30조	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제30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1조	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제31조	국제협력 추진		제32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2조	항만시설의 지원		제33조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운영 등
제6장 벌칙	제33조	보안관리	제6장 벌칙	제34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	국제협력 추진
				제36조	수출 지원
부칙	제35조	벌칙	부칙	제37조	항만시설의 지원
	제36조	벌칙		제38조	수산업 등의 지원
	제37조	양벌 규정		제39조	벌칙
부칙		시행일	부칙	제40조	양벌 규정
				제1조	시행일
				제2조	집적화단지에 대한 적용례

나.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입법필요성 검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제시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함.

민간에서도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국제적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³⁾에 433개(2024년 11월 기준)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 정부는 2023년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⁴⁾ 특히 풍력의 경우에는 2036년까지 34,089MW의 발전설비용량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이는 2022년 풍력 발전설비의 18배 규모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2.3GW 이상의 발전설비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임.

3)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2014년 CDP(영국 소재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작됨.

4) 태양광:풍력 설비용량 비교: ('21년 실적) 92:8 → ('36년 전망) 66:34

[표 2] 203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단위: MW, 정격용량 기준)

구분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매립가스	연료전지	IGCC	소계
'22년	22,100	1,851	1,851	256	1,800	947	346	29,151
'30년	46,500	19,300	1,976	256	1,800	2,547	346	72,725
'36년	65,700	34,089	2,129	256	1,800	3,947	346	108,267

자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

그러나 2024년 6월 기준 운영 중인 풍력발전 설비는 실증용을 포함하여 124개소 2.04GW(육상풍력 110개소 1.88GW, 해상풍력 14개소 0.16GW)로 2030년 전망 19.3GW 대비 약 10%에 불과함.⁵⁾

풍력의 보급이 부진한 사유는 현재 개별 사업자가 입지발굴부터 주민설득, 인·허가 취득 등 모든 사항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⁶⁾을 겪는 한편 인·허가를 취득하는 데에도 장기간(준공까지 육상풍력 약 6년 소요, 해상풍력 약 8년 소요)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제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발굴된 입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어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며, 별도의 환경성평가 제도를 통해 환경성을

5) '24.6월 기준, 발전사업허가 단계의 경우 293개소 38.2GW임(육상 209개소 10.2GW, 해상 84개소 28.0GW).

6)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20.8월)하고 해상풍력 반대서명(53.8만명)을 진행한 바 있음.

확보하되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성·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의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로 계획적인 발전사업 추진으로 전환함으로써 입지발굴 및 주민수용성 확보 부담에 따른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일괄처리에 따라 사업추진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계획입지에 대한 발굴을 주도함으로써 보다 질서 있고 신속한 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해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제정안의 제정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나,

허종식의원안 중 예비지구·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사업에 대하여 입지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안 제29조)은 기존에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종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규제를 받는 것에 법리적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김원이의원안 중 실시계획 승인 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의무(안 제20조제4항) 및 기존 발전사업자의 계획입지 편입에 대한 특례(안 제29조)와 관련하여 국가 단위의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하고, 현행 발전사업허가는 사업자 능력을 위주로 심의하나 계획입지 발전사업자는 입지 규제 측면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양자가 상이하야 기존 발전사업자의 계획입지 당연 편입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각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사 법률안 5건⁷⁾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7)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제2200690호),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제2204470호),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제2204992호),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제2205218호),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제2205511호)

[표 3] 제정안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절차도

1	(산업부장관 (& 해수부장관))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구축·운영	풍황·어업활동·환경·해상교통 등의 정보 수집·분석 활용
2	(산업부장관 (& 해수부장관)) 예비지구 지정 (위원회 심의·의결)	① 어업활동, 해양환경·생태계, 군사작전에 영향 적을 것 ② 항만·어항의 이용 지장이 없을 것 ③ 해상교통안전 확보 ④ 해상풍력에 적합한 풍황 보유
3	(산업부장관) 기본설계안 수립	① 예비지구의 명칭·위치·면적 ②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시행방법 ③ 해양환경성, 해상교통 안전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 ④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4-1	(산업부·환경부·해수부장관)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환경성 검토	(산업부) ① 해양환경적 측면 영향조사 → (해수부) 협의 ② 공유수면의 지역 포함시 환경적 측면 영향조사 → (환경부) 협의
4-2	(지자체장)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① 기본설계안 ② 발전지구 지정·변경·지정 해제 ③ 지역 상생방안 및 이익 공유 ④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5	(산업부장관) 발전지구 지정 (위원회 심의·의결)	① 경제성 확보 가능한 풍황 보유 ②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 ③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 ④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 기여
6	(산업부장관) 사업자 공모·선정 (위원회 심의·의결)	① 발전단가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②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③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7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실시계획 수립	① 해상풍력 개요 ② 위치 및 면적 ③ 소요자금 및 조달사항 ④ 시행기간 ⑤ 도로·교량·항만 등 공공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⑥ 어업권·양식업권 손실 보상 ⑦ 해양환경·생태계 보전 ⑧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이행
8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실시계획 환경성 평가	· (사업자) 환경성평가서 작성·제출 → (산업부) 해수부·환경부에 협의 요청 → (해수부·환경부) 협의 의견 제출
9	(산업부장관)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위원회 심의·의결)	· 30개 법령 인허가 의제 처리 일괄 지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조문별 검토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5조)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표 4] 제정안 조문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구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와 해상풍력산업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구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질서있는 보급을 확대하여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심(「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2. “해상풍력발전시설”이란 해상풍력 발전설비, 송전 및 변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사업용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3. “해상풍력발전산업”이란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관련 부품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란 풍황, 환경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 우수하여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이 고려되는 지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6. “기본설계”란 예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정보·풍황 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해상풍력발전기의 용량 및 전력계통(「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연계 등을 정한 기초 설계를 말한다. 7. “해상풍력발전사업자”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8.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	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2. “해상풍력발전시설”이란 해상풍력 발전설비, 송전 및 변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사업용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3.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란 풍황, 환경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 우수하여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이 고려되는 지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기본설계”란 예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정보, 풍황 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풍력발전기의 용량, 전력계통(「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연계 등을 정한 기초 설계를 말한다. 6. “해상풍력발전사업자”란 해상풍력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7.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라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라 한다)이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9. “풍황(風況)”이란 특정 지역의 풍력자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균풍속·주풍향·풍력밀도 및 난류강도 등의 제반 정보를 말한다. 10.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한다)이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8. “풍황”이란 특정지역의 풍력자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균풍속, 주풍향, 풍력밀도 및 난류강도 등의 제반 정보를 말한다.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이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구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해상풍력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 보급을 확대하여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해상풍력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해상풍력발전지구”, “해상풍력발전사업자”, “개발실시계획”, “풍황” 등의 뜻과 범위를 제시함.

2)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안 제3조~제5조)

[표 5] 제정안 조문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풍력을 위한 정보구축 및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해상풍력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되, 해상풍력 발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및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풍력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 산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풍력을 위한 정보구축 및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해상풍력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되, 해상풍력 발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및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풍력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 산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⑧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⑧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⑨ 국가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정에서 지역의 주민, 어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안 제3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책무를 명시하면서 해상풍력사업자에게 해양환경 보전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안전의 확보 등 해상풍력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김원이의원안은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로 명시하고 있음.

안 제4조는 이 법을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303조⁸⁾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은 제외하고 있음.

이는 「제주특별법」이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허가권한 등을 제주도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사에게 부여하는 등 「전기사업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특별법으로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추진하는 제정안의 적용범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5조는 이 법을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한편,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제정안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련하여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제정안에 따른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우선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가능한 완화되는 규제를 적용하려는 취지를 구현하고 있음.

나.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안 제6조~제9조)

[표 6] 제정안 조문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제6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 ①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예비지구의 지정·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기본설계의 수립·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발전지구의 지정·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 따른 결정·허가·인가·지정·승인·신고·협의·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7.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발전지구의 조성과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비지구·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 ①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비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기본설계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발전지구의 지정·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 따른 결정·허가·인가·지정·승인·신고·협의·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7.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과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비지구·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한 법률·제도 및 정책의 개선 관한 사항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10.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한 법률·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유산청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이용, 과학·기술 및 갈등조정 등 풍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9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재청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이용, 전력계통, 과학·기술 및 갈등조정 등 풍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 조정, 기술 자문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기술자문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추진단 등의 설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추진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추진단과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추진단 등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 전보, 포상, 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6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변경지정 및 지

정해제에 관한 사항,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선정,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 해상풍력 발전과 관계되는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7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촉위원(에너지·자원, 전력 계통, 환경·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등 풍력 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간사위원을 맡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에 해당하는데, 그 기능으로 보면 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이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안 제21조에 따라 각종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게 됨.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때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라면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를 법령에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6조),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문의 신설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은 제5장 부분에서 후술함).

한편,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의 안전 확보, 원활한 발전사업 진행을 위해 발전지구 지정, 사업계획단계부터 해양경찰청장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위원회 위원으로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반면에 국가유산청은 ‘인·허가 일괄 의제’(안 제22조 관련)에서 국가유산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것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위원회 구성에서도 ‘문화재청장’ 또는 ‘국가유산청장’(「정부조직법」 개정⁹⁾으로 ‘문화재청장’이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됨)을 제외하는 의견을 제출함(상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안 제22조 부분에서 후술함).

9) 2024년 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2024년 5월 17일 시행)되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안 제9조는 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허종식의원안은 추진단에 해상풍력발전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제3항)하고 있는데, 추진단의 업무 수행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됨.

한편, 정부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및 추진단과 관련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사항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¹⁰⁾ 등 유사위원회를 활용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조직법」에서 정부조직의 합리적·통일적 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정부조직에 관한 사항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 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두는 경우(녹색성장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 새만금위원회 등)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안 제10조~제18조)

1)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안 제10조~제13조)

[표 7] 제정안 조문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제10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 해상교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제10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 해상교통, 전력계통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 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했을 것 2.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 3.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 4. 항만·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5.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6. 군사 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지역(이하 “허가지역”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지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지구 지정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했을 것 2.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 3.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 4. 항만·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5.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6. 군사 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허가(해상풍력발전사업의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지역(이하 “허가지역”이라 한다)을 예비지구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지역에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업자”)가 그 허가지역에 대하여 예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지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중 관할 기초 또는 광역지자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의견을 듣고 예비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예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풍황계측기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처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에 풍황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풍황계측기 소유자와 풍황계측기(풍황계측기로 측정한 제반 정보를 포함한다)에 대한 매수협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지구 지정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예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풍황계측기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예비지구의 지정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에 따라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전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발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예비지구는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본설계의 수립·확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수의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수의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예비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방법 4.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⑩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예비지구의 지정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에 따라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전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발전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예비지구는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본설계의 수립·확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수의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수의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예비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방법 4.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5. 해양환경성·해양교통안전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계획 6. 그 밖에 예비지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안 또는 기본설계 중 중요한 변경사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외 지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기본설계안 또는 변경하는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설계안 수립 시 해상풍력 부품 조립 및 설치선박 활용을 위한 배후항만 조성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해양환경성·해양교통안전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계획 6. 그 밖에 예비지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안 또는 기본설계 중 중요한 변경사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외 지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기본설계안 또는 변경하는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확정·변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확정·변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안 제10조는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 어업활동, 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허종식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이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김원이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하여 수산업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업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는 해상풍력적합 입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해양공간 및 수산업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임(해양수산부는 아래 예비지구 지정에 관하여도 해양수산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1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독(김원이의원안)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허종식의원안)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

지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허종식의원안은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반면, 김원이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비지구 발굴·지정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시도지사가 예비지구 지정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제정안은 현행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가 예비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법률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뢰보호를 위해서는 예비지구 지정 요청 시 위원회 심의 없이 당연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¹¹⁾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13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복수의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11) 제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의견임.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함).

이는 계획입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체하는 환경성평가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안 제21조(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와 연계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음.

2) 민관협의회 운영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표 8] 제정안 조문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제14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①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지구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중첩하여 위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양	제14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①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어업인단체,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지구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예비지구 지정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결정한다. 1.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2. 발전지구의 지정·변경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 4.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설계안이 공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관협회의의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	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두 개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중첩하여 위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 지정 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결정한다. 1.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2. 발전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4.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설계안이 공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관협회의의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이해관계자등”이라 한다)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민관협의회의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이익공유) ①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에 대해서는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주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이해관계자등”이라 한다)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의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이익공유) ①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에 대해서는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주민참여의 투자규모, 수익률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참여대상 주민 및 어업인의 범위 및 제2항의 투자규모·수익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주민참여에 따른 수익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규모, 주민참여로 인한 수익, 금융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안 제14조는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제도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주민을 설득해야 함에 따라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문제로 작용하였으나 정부 주도 계획 입지제도로 변경하면서 제정안(안 제14조)과 같이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협의회의 협의사항(안 제14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¹²⁾제3항에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

따라 발급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과 관련하여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은 주민참여사업(안 제15조)에 참여한 주민의 이익으로 참여주민 이외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민관협의회 협의를 통해 이를 불특정 다수를 위한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 공유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안 제15조는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어업인 등이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주민 참여 제도'¹³⁾에 비해 참여 대상을 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어업인에 대한 수익률 우대 등을 명시함으로써 어업인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⁴⁾

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3) 발전지구 지정 등(안 제16조~제18조)

[표 9] 제정안 조문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제16조(발전지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14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했던 것 2.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3.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이 가능할 것 4.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민관협의회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를 변경하여	제16조(발전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14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했던 것 2.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3.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이 가능할 것 4.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전지구가 지정·고시된 후 해당 발전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양식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매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발전지구 계통의 연계 및 공동구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구를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전지구가 지정·고시된 후 해당 발전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양식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매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발전지구 계통의 연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 복수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 복수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의 건설 2. 발전지구의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한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를 말한다)의 건설 ② 송전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동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전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송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안 제16조 및 제18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지구(①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할 것, ②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③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이 가능할 것, ④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에 대하여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절차 및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안 제17조는 발전지구 계통의 연계에 대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접속설비¹⁵⁾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송전사업자가 이의 건설 및 운전유지의무를 부담하되, 건설 및 운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허종식의원안은 송전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 외에 발전지구의 가스·수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한 공동구의 건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공동접속설비와 달리 공동구에는 가스·수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15)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접속선로

등 송전사업자가 건설·관리할 수 없는 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등(안 제19조~제29조)

1) 사업자 선정(안 제19조)

[표 10] 제정안 조문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제19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지역이 예비지구로 지정된 허가사업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풍황계측기 매수협약이 이루어진 풍황계측기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시 우대하여야 한다. 1. 발전단가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2.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4.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발전단가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2.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4.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비와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6.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비와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6.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지구 내 기존 풍황계측기 설치자가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기 설치자의 투입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6항에 따른 투입비용의 산정방법·절차 및 납부 방식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9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① 발전단가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②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③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④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입찰방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허중식의원안은 ① 안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허가지역이 예비지구로 지정된 허가사업자, ②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풍황계측기 매수협약이 이루어진 풍황계측기 소유자,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시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 도입 시 기존 법률에 따라 발전사업 시행을 위한 과정에 있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전환 과정에서 기존 법률을 따라 사업을 진행한 기존사업의 신뢰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김원이의원안의 경우 기존 사업자에 대한 입찰 시 우대하는 방식 대신 기존 사업자를 이 법에 따라 선정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간주하는 규정(안 제29조)을 두고 있는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우대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발전지구가 아닌 예비지구 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입찰 시 우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발전지구 내 사업자에 한정하여 우대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전라남도는 기존 사업자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이 아닌, 기존 사업자에 대해 자격요건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2) 발전사업 인허가 등(안 제20조~제23조)

[표 11] 제정안 조문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분할하여 단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개요 2.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 4.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도로·교량·항만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해양환경·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7.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어업권·양식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분할하여 단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해상풍력발전설비의 개요 2.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 4.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도로·교량·항만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해양환경·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7.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어업권·양식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9. 그 밖에 실시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의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 2. 제22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③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미리 해당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9. 그 밖에 실시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 2. 제22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③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미리 해당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⑧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0조에 따라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해제·심의·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⑧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0조에 따라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해제·심의·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보며, 제20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 처분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보며, 제20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경관법」 제27조 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 처분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10.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8.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10.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사항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8.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도 설치의 인가 19.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20.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2.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가 2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7.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2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9.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3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	도 설치의 인가 19.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20.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2.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가 2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7.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2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9.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3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역 중 에너지개발구역으로의 지정 ②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역 중 에너지개발구역으로의 지정 ②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① 산업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산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공사중지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변경되었던 실시계획 등은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해상풍력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공사중지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변경되었던 실시계획 등은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20조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시행계획인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안 제21조에서는 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성평가서 실시·제출의무를 부여하면서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현행 법률에서는 개발사업자가 풍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용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등의 환경성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표 12] 현행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성 검증

구 분	해상풍력
100MW이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¹⁶⁾
50MW이상~100MW미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¹⁷⁾
50MW미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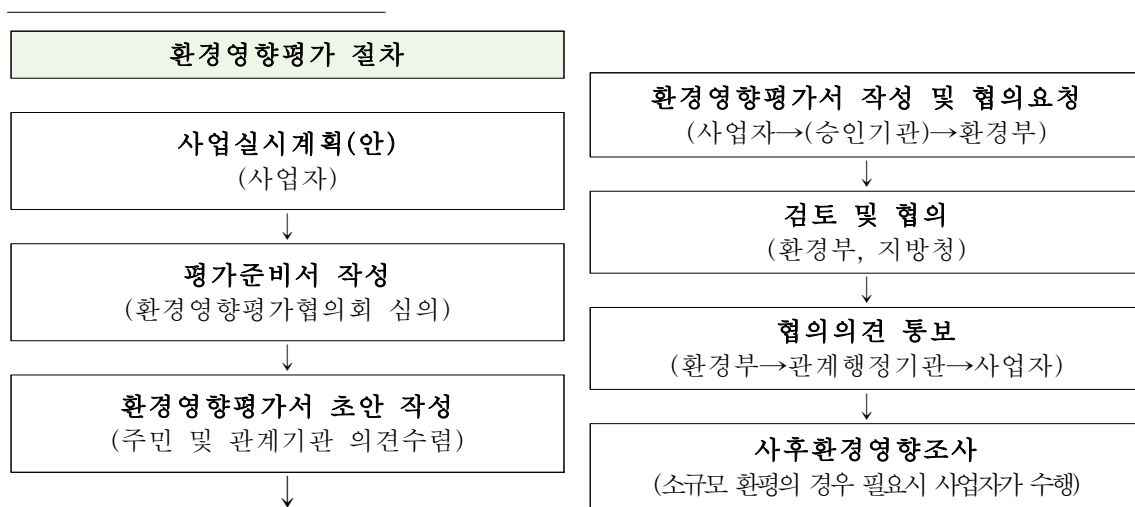
제정안에서는 ① 예비지구 기본설계 단계(안 제13조제2항 관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도록 하고(기본설계에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된

16) 「환경영향평가법」에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환경영향평가절차도>

경우 환경적 측면 영향조사 실시 후 환경부와 협의),

② 발전지구 실시계획 단계(안 제21조 관련) 사업자가 환경성평가를 작성·제출하면(환경성평가 항목과 절차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함),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에 협의 요청을 하며, 해양수산부·환경부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규정하는 협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계획입지 제도를 통해 발전사업을 위한 각종 협의를 최대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7)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①처분기관은 제8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8)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간소하게 하려는 제정안 취지를 반영하여 환경성 검증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기간 단축, 절차간소화 측면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정안의 이러한 환경성 검증 절차는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합의를 통해 마련한 절차와 동일한 내용임.

실시계획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허종식의원안 제20조제4항에서는 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김원이의원안 제20조제4항에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모두 협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 단위의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하므로 대규모 국가 개발사업(항만, 고속철도, 공항 등)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시계획 승인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안 제22조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을 경우, 공유수면사용허가 등 해당 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법률에 따른 총 30개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해상풍력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인·허가 취득 문제는 해상풍력 발전산업 활성화에 대한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제정안과 같이 관련 인·허가 취득을 일괄 의제하는 것은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전사업자의 사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제정안 취지에 부합하며,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¹⁹⁾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에 따르는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관련 인·허가 취득 기간이 현행 36개월 소요에서 14개월 소요로 약 22개월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19) <유사업법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18. (생략)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를 비롯하여 총 30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 법률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매장유산 포함) 보호는 국가의 책무로서, 모든 개발사업 전에 국가유산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① ‘매장유산 분포여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안 제22조제12호 관련),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안 제22조제13호 관련)를 인·허가 일괄 의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취지에서 ③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실시계획에 대한 심의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안 제20조제5항제7호) 및 ④ 국가유산청장(김원이의원안에서는 “문화재청장”으로 규정)을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조항(안 제7조제1호 중 “국가유산청장” 또는 “문화재청장”)을 각각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환경부는 자연경관영향협의(안 제22조제1항제22호)는 독립적인 절차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심의하는 것이므로 인·허가 의제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바, 안 제21조제3항에서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환경성평가서에 대한 의견 제출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를 갈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착공 및 준공 등(안 제24조~제27조)

[표 13] 제정안 조문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제2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착공 신고)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2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착공 신고)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착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준공인가)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항에	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착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준공인가)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항에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다른 준공인가 전에는 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풍황 계측기의 이용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13조제4항에 따른 풍황계측기 설치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개발행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선 실시한 경우 이 비용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 대상, 절차 및 납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준공인가 전에는 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풍황계측기의 이용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13조제4항에 따른 풍황계측기 설치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개발행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선 실시한 경우 이 비용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의 부과 대상 및 절차, 납부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 발전사업의 착공신고 및 준공 인가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안 제24조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²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상

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그 밖에
부수되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함.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토지의 수용·사용 규정에 관하여 토지 등의 공
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
는 등 재산권 침해 소지가 높아, 수용대상 사업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
요가 있는데,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지역 주민 소유의 토지를 강제적으
로 취득할 정도의 충분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에
서 제정안 규정(제24조)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나,

「토지보상법」 별표(‘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제정안은 공공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기능하려는 목
적을 감안할 때 「토지보상법」상 토지등의 공공수용을 위한 공익
성이 일정 수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
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 등(허종식의원안 제28조 및 제29조, 김원
이의원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표 14] 제정안 조문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제28조(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 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 ①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 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 또는 발 전지구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9조(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아닌 지 역에서의 해상풍력사업) ① 예비지 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 상풍력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 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에 입지 적정성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고, 인가등을 할 때에 그 평가 결 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 른 환경영향평가 3.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 른 해역이용 협의 및 같은 법 제 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입지 적정성 평가 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제29조(전기사업허가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풍력발전사업자인 경우 이 법에 따 라 선정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본다.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허가하거나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3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3.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5.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안 제28조는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²¹⁾에 대해서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허종식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원이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필요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집적화단지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일종의 계획입지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입지 제도의 강화라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집적화단지를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에 편입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 처우(안 제19조 관련)와 연관된 것이므로 이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해양수산자원부는 집적화단지에 대하여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

21)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풍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구역임. 참고로 현재까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곳은 1개소임. * 전북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21.12. 지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공포 시 지정되어 있는 집적화단지에 한하여 해당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허종식의원안 제29조는 예비지구·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통해 입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할 행정기관장이 인허가 등을 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하여 기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종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규제를 받는 것에 법리적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김원이의원안 제29조는 기존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²²⁾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풍력발전사업자인 경우 이 법에 따라 선정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하여 현행 발전사업허가는 사업자 능력을 위주로 심의하나 제정안에 따른 계획입지 발전사업자는 입지 규제

22)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측면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양자가 상이하여 기존 발전사업자를 계획입지 발전사업자로 편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안 제19조와 관련하여 기존 법률에 따라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처우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김원이의원안 제30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공포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안 제30조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공포한 날) 이후 풍황계측기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 시행 이후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계획입지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려는 것인 반면,

허종식의원안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금지하거나 이 법 시행 이후 풍황계측기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정안 시행 이후에도 제정법안에 따라 지정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이외의 곳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현행 「전기사업법」 등에서 정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하여 해상풍력발전에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계획입지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마. 제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허중
식의원안 제30조~제34조, 김원이의원안 제31조~제38조)

[표 15] 제정안 조문

허중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해상풍력기술의 정보교류 5. 그 밖에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기업의 기술 검증을 위한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해상풍력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발전지구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운영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입지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제31조(국제협력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국제협력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수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풍력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제32조(항만시설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내외에서 해상풍력발전설비와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전시장에 해상풍력발전설비를 출품하는 자 4.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제37조(항만시설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수산업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수산업, 해양환경 및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제33조(보안관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기본설계 및 개발실시계획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2.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4. 제9조에 따른 추진단 및 지원단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추진단의 파견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3.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단의 파견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조사·연구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허종식의원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김원이의원안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는 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해상풍력 실

증단지의 조성·운영,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국제협력 추진, 수출·항만 시설·수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 힘쓰고, 해상풍력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산업 등에 대한 지원에도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통해 재생에너지발전 기반을 보다 튼튼히 하고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김원이의원안은 제38조에서는 수산업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하여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점용·사용으로 인해 파괴된 수산자원 회복과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점용료·사용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사용료²³⁾)

2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를 활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바. 제6장 벌칙(허종식의원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김원이의원안 제39조 및 제40조) 및 부칙

[표 16] 제정안 조문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제35조(벌칙) ① 제33조를 위반하여 기본설계 및 개발실시계획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6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	제39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

허종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0조에서 정하는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인·허가등 절차에 관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중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0조에서 정하는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인·허가등 절차에 관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6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

허중식의원안	김원이의원안
	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1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적화단지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는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허중식의원안 제35조는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기본설계 및 개발실시 계획과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하려는 것으로, 계획입지제도에 따른 중요정보로 인한 사적이익 편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이해됨.

허중식의원안 제36조·김원이의원안 제39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인·허가 의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발전사업 공사를 시작한 경우,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과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른 법률의 이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시행일과 관련하여 허중식의원안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김원이의원안(부칙 제1조)에서는

① 이 법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② 신규 발전사업 허가 금지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③ 풍황계측기 설치 금지는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관련,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방안,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절차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방법, 기본설계안 확정을 위한 해양환경 측면의 영향 조사 방법, 민관협의회 운영 방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방법,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부처와의 조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며,

②·③ 관련, 김원이의원안 제30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법률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제정안에 따른 새로운 계획입지 방식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② 관련)과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을 위해 풍황계측기 설치와 같이 신규 발전사업의 추진은 조속히 금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③ 관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김원이의원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제정안 시행 이후에도 발전사업허가를 비롯한 발전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김원이의원안

제30조 적용배제),

집적화단지를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는 안 제28조(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 기존에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 규정하는 김원이의원안 제29조(전기사업허가등에 대한 특례) 등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458

참고 1

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

□ 발전량 현황(2023년 자료)

에너지원	발전량(GWh)	비중(%)
양수	3,784	0.64
무연탄	1,889	0.32
유연탄	183,038	31.19
유류	1,487	0.25
LNG	147,571	25.14
원자력	180,494	30.75
기타	2,091	0.36
신재생에너지합계	56,562	9.64
수력	3,716	0.63
태양에너지	29,288	4.99
풍력	3,382	0.58
해양에너지	438	0.07
바이오에너지	12,577	2.14
연료전지	4,164	0.71
석탄 액화가스	997	0.17
총합계	586,916	100

* 출처 : 한국전력통계(한국전력공사, 2024)

참고 2

풍력 보급/허가 통계

□ 풍력 보급/허가 통계('24.6. 기준)

○ 풍력발전 보급통계

구분	육상풍력		해상풍력		계	
	개소	준공용량 (GW)	개소	준공용량 (GW)	개소	준공용량 (GW)
총합계	110	1.88	14	0.16	124	2.04

* 터빈 실증용 포함(육상 1개소, 해상 9개소)

○ 풍력발전 발전사업허가 통계

구분	육상풍력		해상풍력		계	
	건	허가용량 (GW)	건	허가용량 (GW)	건	허가용량 (GW)
총합계	209	10.2	84	27.95	293	38.1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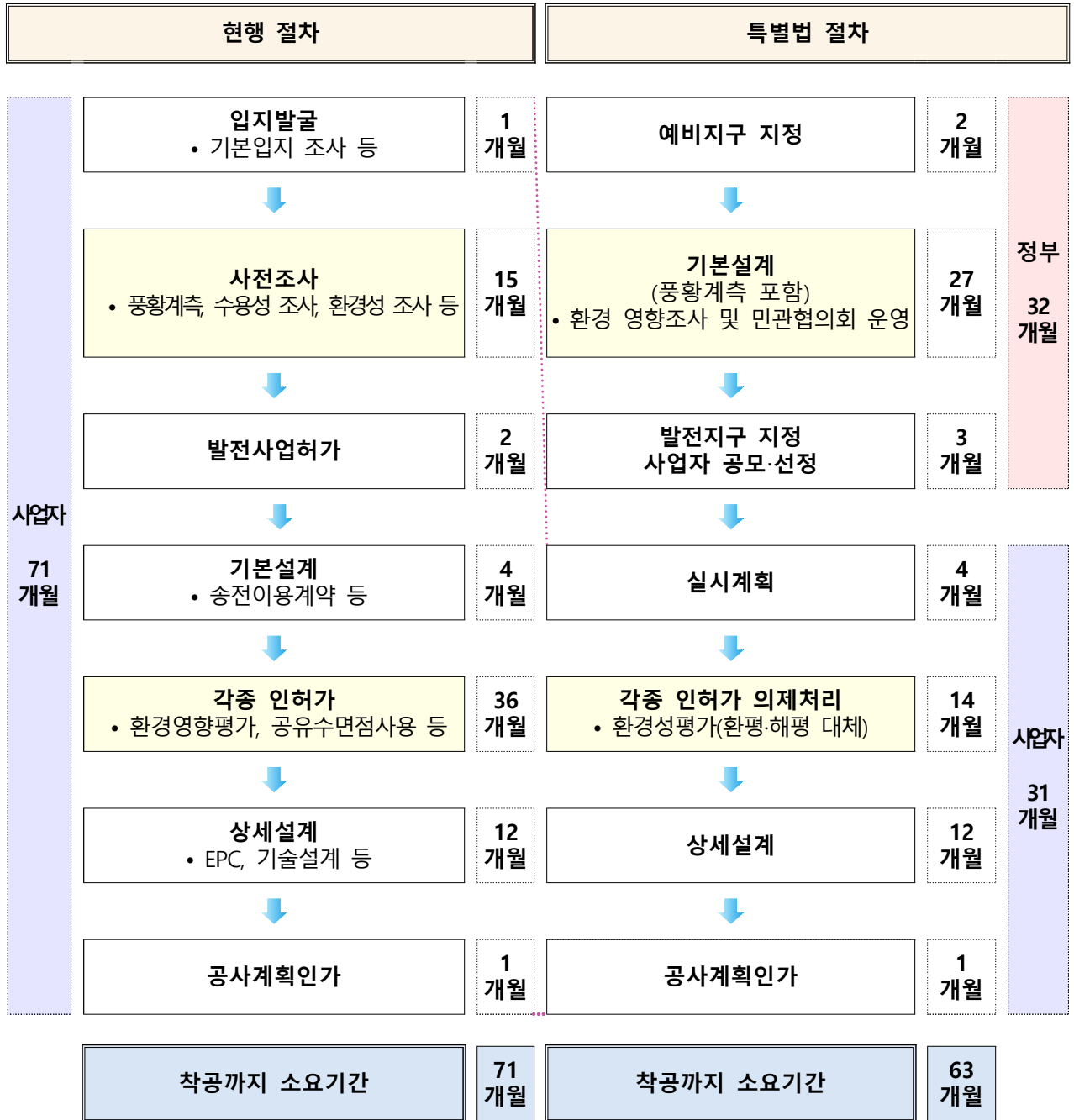
풍력발전사업 절차도 [현행 방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 4

현행 풍력사업 개발 절차 vs 특별법 절차 비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 5

풍력 관련 계획입지제도 국가별 현황

구분	내용	덴마크	일본	대만	한국	
					현행	특별법 도입
제도	근거 제도	재생 에너지법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	일반법	신재생법	해상풍력 특별법
	대상사업 범위	해상풍력	해상풍력	해상풍력	신재생e	해상풍력
계획 절차	해양공간계획 (MSP)	○	-	△	X	○
	입지조사 주체	정부	-	정부	X	정부
	단지 기본계획 주체	정부	정부(지자체 의견)	정부	X	정부
	공모 주체	정부	정부	정부	X	정부
	설계 주체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민간 주도	사업자
조사	전략환경평가 주체 및 시점	정부, 기본계획	-	정부, 기본계획	정부	정부
	환경영향평가 주체 및 시점	사업자, 설계단계	사업자, 설계단계	사업자, 설계단계	사업자, 설계단계	사업자, 설계단계
인 허가	단일창구(Single window) 여부	○	-	○	X	○
	의제처리 여부	x	-	x	X	○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주체	환경보호청, 해안청, 에너지청	지자체 또는 환경부	환경보호청	정부	정부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 시점	입찰 이후	입찰 이후	입찰 이후	발전사업 허가 이후	사업자 선정 후
주민 참여	참여 시점	입지조사, 기본계획, 설계단계	촉진지구 후보, 촉진지구	설계 단계	-	예비지구, 발전지구, 실시계획
	참여 방식	공청회 등	협의회	어업, 전기공생 환경사회 점검	공청회	민관협의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규제효율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 2022, 한국환경연구원 재구성)